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78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이양수·김기용·김상훈
이인선·김재섭·정동만
김선교·안상훈·김은혜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이 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제9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이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p>

<p>1. ~ 4. (생략)</p> <p>④ (생략)</p> <p>⑤ <u>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p>
--	--